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04월 22일

다산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용**	용** 1974-05-15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마길	거주불명등록 2020-04-22
김**	김** 1974-06-21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가길	거주불명등록 2020-04-22
이**	이** 1996-03-30	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	거주불명등록 2020-04-22